

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5년 11월 14일
-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~40인 이하로 구성 (안 제2조)
-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 (안 제2조)
-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 (안 제4조)
- 검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·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
-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제6조“(임기)”의 조문은 본 조항이 해촉 사항 까지 포함하고 있어“(임기 및 해촉)”으로 수정하고
- 제13조(수당과 여비) 내용 중 “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라는 조문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- 제14조(시행규칙) 조문 중 “정할 수 있다”를 “정한다”로 수정하여 명확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등 본 조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